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
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대표발의: 김 성 회 의원)

| | |
|------------|-------|
| 의 안 번 호 | 22-11 |
|------------|-------|

발의년월일: 2022. 1.
발의자: 강명숙, 권영숙, 김기석, 김성희,
김진천, 이민석, 최은하, 채우진

5. 예산조치 : 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: 2022. 1. 13. ~ 1. 18.

나. 의견제출: 없음

1. 개정이유

다양한 교통민원신고 유형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두어 좀 더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가능토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자문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나.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다.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3. 관계법령

- 가. 지방자치법 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

4. 조례안 : 붙임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
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자문위원) ① 위원회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2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자문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위원의 자문에 응하며, 표결은 할 수 없다.

③ 자문위원의 자격은 10년 이상 여객운수 업체 또는 관련 단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.

④ 자문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종 전의 제8조)제1항 및 제2항 중 “**위원 및**”을 각각 “**위원과 자문위원 및**”으로 한다.

제12조(종전의 제11조) 중 “**위원 중**”을 “**위원과 자문위원 중**”으로 한다.

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제11조(수당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u> | <u>제12조(수당) 원과 자문위원 중 -----.</u> |
| <u>제12조 (생략)</u> | <u>제13조 (현행 제12조와 같음)</u> |

【관계법령】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·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

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제12조(수당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자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
4. 작성자

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이름 | 교통건설국 교통지도과 석지민 |
| 연락처 | 02-3153-9685 |